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검토 보고서

###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월 12일(화)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0년 1월 14일(목)

### 4. 제정근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9. 5. 8 시행 법률 제9584호) 제3조, 제6조, 제11조 등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다음과 같다”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에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마포구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안 제5조제1항을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12조제1항에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안 제3조제4호 중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 등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구에서 출연한 기관이 중복 규정된바, 안 제12조제1항 중 “구에서 출연한 기관”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전문위원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p> <p>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u>다음과 같다.</u></p> <p>1. ~ 4. (생략)</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p> <p>제3조(적용대상 기관) ----- -----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4. (원안과 같음)</p>
<p>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1. ~ 5. (생략)</p>	<p>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1. ~ 5. (원안과 같음)</p>
<p>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문화 증진)</p> <p>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문화 증진)</p> <p>① ----- ----- <u>필요한 경우 학교법인,</u> ----- ----- -----.</p> <p>② ~ ③ (원안과 같음)</p>

# 관 계 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8]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 제3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 시행, 자료조사, 교육 · 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친환경상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친환경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또는 시 · 군 · 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 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